

심 의 결 정 문

심의번호	INC-190221-006	게재일	2019.02.02 08:28
제 목	생후 11개월 손자 산 채로 아궁이에 던져 죽인 할아버지		
U R L	https://www.insight.co.kr/news/208594		
주 문	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'주의'로 결정한다.		
이 유	<p>1. 인사이트의 해당 기사는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카로이 마을에 사는 남성이 11개월 난 손자를 살해했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.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생후 11개월 된 손자를 아궁이에 던져 죽인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전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고,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다. 제목도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.</p> <p>2.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 4조 5항 (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) 제7조 제10항(선정보도의 제한)을 어겼다고 보며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/p>		
적용조항	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 4조 제5항 (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)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0항(선정보도의 제한)		
<p>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, 김용, 남영진, 이강혁, 이성규, 황용석</p>			